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(안상훈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0790

발의연월일: 2025. 6. 13.

발 의 자: 안상훈·최보윤·안철수

이성권 • 박성훈 • 박덕흠

고동진 • 김소희 • 정연욱

김장겸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%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기초 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, 기준연금액은 매년 전년도의 기준연금액 에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산정하고 있음.

2014년 기초연금 시행 이후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감소하고 있으나('14년 44.5%→'23년 38.2%),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의 노인빈 곤율을 보이는 등 노인빈곤 문제가 아직 심각한 수준으로 노인빈곤의 실 질적 해결을 위해 기준연금액을 인상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은 상황임.

이에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하위 50%인 사람들에 대해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40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함(안 제5조의2).

한편, 현행법은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 기초연금액의 20%를 감액하도록 정하고 있음. 하지만 부족한 노후 소득을 보충하기 위하여 위장 이혼을 선택하는 등 사회적 부작용이 야기

되고 있음. 이에 부부에 대한 기초연금액 감액 조항을 삭제하여 노인생활 안정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(안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).

법률 제 호

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초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의2제1항 중 "100분의 40"을 "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(이하 "기준 중위소득"이라 한다)의 100분의 50"으로, "기준연금액은 30만원"을 "2026년의 기준연금액은 40만원"으로한다.

제8조제1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기초연금액(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감액분이 반영된 금액을 말한다)을"을 "기초연금액을"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"기초연금액(제8조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감액분이 반영된 금액을 말한다)을"을 "기초연금액을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5조의2(저소득 기초연금 수급권 제5조의2(저소득 기초연금 수급권 자에 대한 기초연금액 산정의 자에 대한 기초연금액 산정의 특례) ① 제5조제2항 전단에도 특례) ① -----불구하고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100분의 40 이하 ----- 「국민기초생활보 인 사람에게 적용하는 기준연금 장법 :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 액은 30만원으로 한다. 준 중위소득(이하 "기준 중위소 득"이라 한다)의 100분의 50 ---- 2026년의 기준연금액은 40만 원---. ②·③ (생 략) ②·③ (현행과 같음) 제8조(기초연금액의 감액) ① 본 제8조(기초연금액의 감액) <삭 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 제> 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 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 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 액을 감액한다. ② 소득인정액과 제5조, 제5조 의2,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기 기초연금액을-----초연금액(제1항이 적용되는 경 우에는 그 감액분이 반영된 금 액을 말한다)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

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.

③ 제5조의2의 적용을 받는 기 초연금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 과 해당 <u>기초연금액(제8조제1</u> 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감 액분이 반영된 금액을 말한다) 을 합산한 금액이 저소득자 선 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(제5조 의2에 해당하지 않는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기준연금액을 말한 다)을 합산한 금액 이상인 경 우에는 제5조의2의 적용을 받 는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기초 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 다.

④ (생 략)

③
<u>기초연금액을</u>
④ (현행과 같음)